

EU Brief

| EU 동향 |

- 유로존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
Eurozone's recovery and the need for a structural reform
-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유럽 주택시장
Bi-polarization of the European housing market
- 이란 핵협상과 EU의 역할
The EU's role in Iran nuclear negotiation
- 리스본 조약으로 FDI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는 EU
Integration of EU's FDI policies through Treaty of Lisbon
- 글로벌 가치사슬과 동유럽 제조업
Global Value Chain and Eastern Europe's manufacturing sector



YONSEI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2013년 하반기 EU의 경쟁법 집행 동향

Execution of the EU competition law in the second half of 2013

The regulatory risk arising from the aggressive execution of the competition law is rising around the world. This article covers the major trend of the EU competition law execution in the second half of 2013. The EU competition authority ① proposed legislation to facilitate damage claims by victims of antitrust violations, ② imposed fines against 6 banks for rigging Euribor and Tibor rates, ③ started proceedings of the legal sanction for ISDA and 13 global investment banks which are accused of infringing antitrust law for CDS, ④ regulated on reverse payment settlements in pharmaceutical industry, ⑤ approved Microsoft's acquisition of Nokia's mobile device business, and ⑥ consulted on commitments offered by Samsung Electronics regarding use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EU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 정리의 필요성

원칙적으로 국가의 관할권은 해당 국가의 영토 또는 국민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각국의 경쟁당국은 외국 영토에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서로 경쟁하듯이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라 하는데, 각국의 경쟁당국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조조사를 벌이기도 하고, 각국 경쟁당국별로 제재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범위반 기업이 다중 제재를 받기도 한다. 세계 경쟁당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법집행으로 인해 범위반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규제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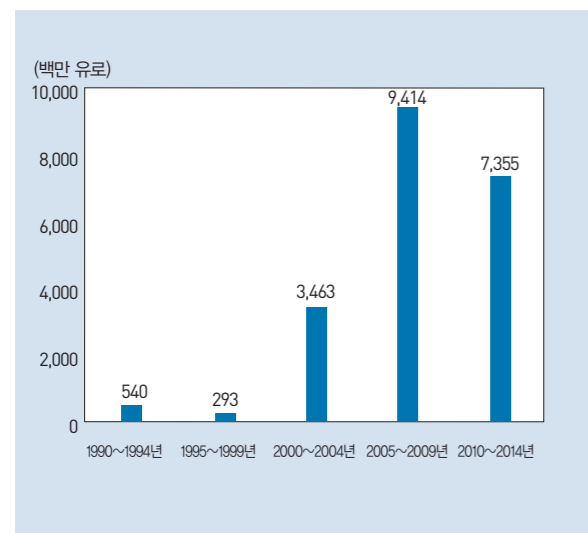
한국기업들이 세계 경쟁당국의 집행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각국 경쟁당국 중 특히 EU 경쟁당국의 법집행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취지에서 2013년 하반기 EU의 경쟁법 집행의 중요 동향을 간단히 정리해보기로 한다.

① 경쟁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지침 개정안 발표¹

EU 경쟁당국은 2013년 6월 11일 경쟁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지침(Directive)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종래 EU 사법재판소는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전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전액배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장애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피해자들만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다. 지난 7년간 EU 경쟁당국의 경쟁법 위반결정 사건 중 약 25%만 후속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정도로 피해자 구제가 미흡했다. 이에 경쟁법의 사적 집행 가능성을 높여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EU 경쟁당국의 손해배상소송 지침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²

1 European Parliament (2013. 6. 11.).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legislation to facilitate damage claims by victims of antitrust violations.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525_en.htm>
2 김희은 (2013). "EU의 경쟁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혁안의 키워드." 『경쟁저널』, 169, 145.

★ EU 경쟁당국의 경쟁법 과징금 집행 규모



주: 1990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집계
자료: EU 집행위원회

(i) 각국 법원은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증거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증거공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손해입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요청하는 증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ii) 각 회원국의 경쟁당국이나 법원이 특정행위가 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회원국 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iii) 피해자가 경쟁법 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전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지 않으며, 위반행위가 완료된 이후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시효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며, 경쟁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시효 진행을 중지하여 조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iv) 자진신고를 하여 벌금을 면제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일부 면제해줄 수 있다. 특정행위자가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다른 위반행위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리니언시(Leniency Programme,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하여 벌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v) 손해전가의 항변(passing-on defence)과 관련하여서는 직접구매자와 간접구매자를 구분하여 항변 인정 여부를 규정하였다. 손해전가의 항변이란, 직접구매자가 카르텔로 인하여 지불한 초과가격으로 발생한 손해를 하위 유통단계의 간접구매자에게 전가하였기 때문에 직접구매자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항변을 의미한다.³ 직접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반행위자는 손해전가의 항변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간접구매자가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구매자의 가격에 초과분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초과분이 간접구매자 본인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준금리 담합 은행들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17억 유로의 벌금 부과

EU 경쟁당국은 글로벌 시장의 벤치마크 금리인 유리보(EURIBOR: 유럽 은행 간 금리)와 티보(TIBOR: 도쿄 은행 간 금리) 조작에 가담한 6개 은행들에 대해 2013년 12월 4일 사상 최대 규모인 17억 유로(약 2조 4,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이 금리조작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은행들은 독일의 도이체방크, 영국의 RBS,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너럴, 미국의 JP모건과 씨티그룹 등이다. 영국의 바클레이즈와 스위스의 UBS는 리니언시를 신청하여 유리보 담합에 관한 벌금을 면제받았으나, 지난 2012년 6월 리보(LIBOR: 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혐의로 이미 미국, 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4억 5,000만 달러와 1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리보, 유리보, 티보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리보금리는 대형 은행들이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들을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를 의미한다. 은행들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입할 때 지급할 금리를 은행연합회에 보고하면, 은행연합회가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여 리보금리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유리보금리는 유럽 소재 주요 은행 간 단기차입 거래에서 사용되는 금리를 기준으로, 티보금리는 일본 소재 주요 은행들의 금리를 평균하여 결정된다. 금리파생상품은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상품으로 리보, 유리보 등 벤치마크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EU 경쟁당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던 은행들은

3 가령, 밀가루업체들이 밀가루 가격담합을 하여 과자업체가 초과가격을 지급하고 밀가루를 구입한 경우, 과자업체는 밀가루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사실상 과자가격 인상을 통해 이미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음. 즉,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과자업체는 통상적으로 원가 인상을 이유로 과자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담합의 1차 피해자인 과자업체가 밀가루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밀가루업체는 과자업체가 이미 밀가루 담합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과자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 전가하였으므로 과자업체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게 되는데 이를 손해전가의 항변이라 함.

단기차입금리가 상승하자, 금리를 실제보다 낮게 보고하여 기준금리와 연동된 차입금리를 낮춰 이익을 얻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조작을 통해 (i) 단기차입 조달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얻었고, (ii) 차입금리 인하로 은행의 건전성을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기만하였으며, (iii) 기준금리가 낮을 때 이익을 보는 파생상품에 투자한 후 기준금리를 떨어뜨려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 EU 경쟁당국의 카르텔 과징금 집행 10대 사례

(단위: 유로)

연도	기업명	분야	규모
2008	세인트 고베인	자동차 유리	880,000,000
2012	필립스	TV · 컴퓨터 모니터 브라운관	705,296,000
2012	LG 전자	TV · 컴퓨터 모니터 브라운관	687,537,000
2013	도이체방크	유리보 파생금융상품(EIRD)	465,861,000
2001	호프만 라 로슈	비타민	462,000,000
2013	소시에테 제너럴	유리보 파생금융상품(EIRD)	445,884,000
2007	지멘스	가스절연개폐장치	396,562,500
2008	필킹턴	자동차 유리	357,000,000
2009	E.ON AG	가스	320,000,000
2009	GDF 수에즈	가스	320,000,000

주: 1969년부터 2013년까지 집계
자료: EU 집행위원회

③ CDS 시장 담합에 가담한 투자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 착수⁴

EU 경쟁당국은 신용파생상품인 CDS 관련 반독점 혐의로 ISDA(국제스왑 파생투자상품협회)와 메릴린치, BNP 파리바 등 13개 투자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하였다. EU 경쟁당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은행들은 CDS 시장의 정보제공업체인 마르킷, ISDA와 결탁하여 독일증권거래소와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CDS 시장 진입을 방해하였다. CDS를 비롯한 신용파생상품은 기업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큼 손실을 부담하는 상품으로 보험과 성격이 유사하다. 투자은행들은 독일증권거래소와 시카고상업거래소가 CDS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마르킷에만 독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투자은행들이 장외시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거래소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였고, 이로 인해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졌다고 판단하였다. EU 경쟁당국은 투자은행들의 담합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은행 연간 수익의 약 1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④ 제약사의 역지불합의에 대해 제재⁵

EU 경쟁당국은 2013년 6월 19일 덴마크 제약기업인 룬드벡 등이 역지불합의(pay for delay)를 통해 복제약 출시를 지연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벌금을 부과하였다. 역지불합의란, 특허권을 보유한 제약회사와 특허권 미보유 제약회사가 특허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복제약품(generic)을 생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역지불(reverse payment)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 미보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룬드벡은 항우울제인 시탈로프람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2년 복제약품의 출시를 연기하는 대가로 복제약 제조회사들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룬드벡은 폐기를 목적으로 복제약 제조사들로부터 복제약품을 구매하였으며, 이윤의 일정 비율을 복제약 제조회사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룬드벡과의 역지불합의가 종료된 후 복제약 제조사가 시장에 진입하자, 영국에서는 이전보다 약 90%나 낮은 가격으로 항우울제 복제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당해 사안에서 특허권자인 룬드벡에게는 9,400만 유로(약 1,400억 원), 4개 복제약 제조사들에게는 5,200만 유로(약 78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룬드벡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역지불합의가 경쟁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그러한 행위의 효과가 경쟁제한적인지에 대한 것이다.⁶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TFF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01조 제1항은 경쟁을 금지·제한 또는 왜곡하는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사업자 간의 합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목적 자체로 경쟁제한적이라 할 수 있는 가격담합이나 시장분할의 경우 경쟁제한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EU 경쟁법 판례의 태도이므로, 행위의 목적 자체가 경쟁제한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U 경쟁당국은 역지불합의로 인하여 저렴한 복제약품의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역지불합의를 경쟁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경쟁제한적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허제도 자체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의 이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특허권 행사의 범위에서는 역지불합의도 합법적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⑤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문 인수 승인⁷

EU 경쟁당국은 2013년 12월 4일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및 서비스 사업 부문을 총 54억 유로(약 7조 8,000억 원)에 인수하는 합병안을 승인하였다. 노키아는 2013년 2/4분기에 휴대전화 판매가 27%나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사업의 쇠퇴를 만회하기 위해 모바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모색하고 있었다. EU 경쟁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사업 부문이 겹치는 영역이 제한적이므로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하였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시장에 삼성, 애플 등 강력한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합병 이후에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U 경쟁당국은 노키아의 스마트폰 생산시장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바일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이메일 서버 소프트웨어 시장 간의 수직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모바일 운영체제를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가능성이 적으며, 안드로이드나 애플 등 다른 운영체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운영체제를 공급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리케이션 공급을 제한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EU 경쟁당국은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미국 법무부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인수합병 승인에 이어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인수는 2014년 1/4분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⁴ European Parliament (2013, 7, 1.), European Commission sends statement of objections to 13 investment banks, ISDA and Markit in credit default swaps investigat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630_en.htm>

⁵ European Parliament (2013, 6, 19.), European Commission fines Lundbeck and other pharma companies for delaying market entry of generic medicines.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563_en.htm>

⁶ 김희은 (2013). "유럽의 제약산업 관련 경쟁법 집행동향: Sector Inquiry, 역지불합의, 특허권 남용을 중심으로." 『경쟁저널』, 170, 135-137.

⁷ European Parliament (2013, 12, 4.), European Commission clears acquisition of Nokia's mobile device business by Microsoft.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1210_en.htm>

EU 역내 이주민 문제의 실상

Immigration issue in the EU

From January 1st 2014, Romanians and Bulgarians can move around freely in the EU labour market. Once Romania and Bulgaria have been given the free movement and residence right after 7-years of grace period, some people in the UK, France, and Germany are terrified of the second tsunami of migrants. However, it needs verification whether migrants in the EU, especially those from Eastern Europe are having negative economic effects. It appears that the proportion of intra-regional migrants in the EU is insignificant at 2.7%. In addition, intra-regional migrants in the EU receive welfare benefits which is significantly lower than native people. Various studies show that migrants in the EU are not actually running down the welfare budget, but rather they are contributing to it.

동유럽 이주자는 EU의 '복지도둑'?

2014년 1월 1일부터 EU 노동시장이 루마니아인과 불가리아인에게 전면 개방되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에 EU에 가입했으나 EU 가입국에게 주어지는 자유로운 거주 이전의 권리를 7년간이나 유보 당했다. 그 이유는 2004년 폴란드 등 10개국 EU에 가입한 이후 영국을 비롯한 기존 EU 회원국이 이주민 폭증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영국에는 약 2년 동안 무려 50만 명의 이주민이 몰려들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한 7년간의 유예기간이 완료되자 영국, 프랑스, 독일은 제2의 이주민 쓰나미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다. 동유럽의 이주민들이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와 복지기금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각종 방어정책을 내놓고 있다. 영국은 이미 2009년 2월 경제위기를 방패삼아 영국인을 우선 고용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4년부터 입국 이후 3개월간 이주민의 실업수당 청구권을 유예했고, 추가로 주택복지를 중단하고 국민건강서비스 이용 효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동유럽 이주민에 대한 전면 개방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는 선택권을 EU에 요구했다. 독일의 기독교사회당은 이주 이후 3개월 동안 육아수당 등 복지혜택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주요국의 압박이 심해지자 EU 집행위원회도 2013년 11월 자유이주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권리 선용을 장려하는 타협안인 '5개 법규(five actions)'를 신선했다.¹ 첫째, 복지혜택을 노린 위장결혼(marriages of convenience)을 방지하고,

둘째, 상시거소(habitual residence)² 테스트를 실시하며, 셋째, 각 회원국의 이주민 복지를 장려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ESF)을 배분³하고, 넷째, 각 회원국의 이주민 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다섯째, EU의 자유이주 권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⁴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유럽 이주민에 대한 EU 주요국의 이러한 반응이 과연 적당한지는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 당장 2014년 1월 1일 영국 정치권이 직접 확인한 것처럼 루마니아에서 출발한 영국행 비행기는 자리를 다 채우지도 못했고 140명의 승객 중에 루마니아인은 단 2명에 그쳤다. 실제로 EU 역내 이주자들이 이들 주요국에서 복지예산을 갉아먹는 '복지도둑'인지도 사실에 입각하여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동유럽 이주자의 EU 내 인구 비중은 미미

먼저 동유럽 이주자의 인구 비중이 과연 해당 거주국의 복지를 축낼 만큼이나 되는지 살펴보자. 물론 EU 주요국들이 주장하듯이, EU 내 이주민들이 몇몇 주요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2년 기준 EU 역내 이주민(1,362만 명) 중에서 96%(1,310만 명)가 EU의 기존 15개 회원국에 몰려 있다. 이 수치는

1 European Commission (2013, 11, 25.). Free movement of people: five actions to benefit citizens, growth and employment in the EU.
 2 '비노동이주민은 가족관계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이전이 일어난 국가(常居所)에서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
 3 2014년 1월부터 각 회원국의 원활한 이주민 수용정책을 위해 ESF의 20% 이상을 배분.
 4 47%의 EU 시민은 지역 당국이 자유이전권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경험.

⑥ 삼성전자, 필수표준특허 남용 혐의 조사에 대해 시정방안 제시⁸

삼성전자는 2013년 10월 17일 향후 5년간 애플 등 경쟁사에 대하여 필수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시정방안을 EU 경쟁당국에 제시하였다. 이는 유럽에서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모바일 제품의 필수표준특허 소송을 5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애플과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권을 남용하여 유럽 각지에서 판매금지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하였다. EU 경쟁당국은 삼성전자가 3G 표준특허⁹에 대해 유럽표준기구(ETSI)에 프랜드(FRAND)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였고, 애플이 라이선스 협상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판매금지(injunction)를 청구하여 경쟁자 배제를 시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경쟁법 위반혐의가 인정될 경우 183억 달러(약 19조 4,5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삼성전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EU 경쟁당국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삼성전자의 시정방안을 수용할 것인지를 질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U 경쟁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이 삼성전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약속(commitment)으로 조사가 종결된다.¹⁰ 타협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필수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경쟁 제품의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방어 차원에서의 판매금지청구는 허용된다.

한국기업은 EU의 경쟁법 집행 강화에 유의

EU 경쟁당국의 최근 동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는 점과 은행 간 금리담합 등 카르텔 사건들에 대해 사상 최대의 벌금을 부과하여 보다 강력하게 경쟁법 위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도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적 집행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EU 지침 개정안은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권고안과 함께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13년 12월 경쟁침해 행위에 대한 구글의 개선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경쟁법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EU 역내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경쟁정책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EU의 집행 동향은 한국의 경쟁당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한국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더욱 활성화하거나 경쟁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규제(과징금의 수준 또는 형사 처벌)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8 European Parliament (2013, 10, 17.). European Commission consults on commitments offered by Samsung Electronics regarding use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971_en.htm>
 9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 규격에 포함되며 제품 제조과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허를 의미.
 10 경쟁법 사건의 합의해결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은 이를 동의명령제도(Consent Order), EU는 서약이행제도(Commitment Decision), 일본은 동의심결제도, 한국은 동의의결제도라고 부름.